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44

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 송옥주・이수진・박 정

윤준병 • 전종덕 • 한정애

김남희 · 임미애 · 김태년

황명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, 식품안전,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 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영국,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.

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.

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,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.

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 기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

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(안 제23조의3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로 하고,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3조의4(종전의 제23조의3)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국가먹거리종합계획에 따라 다음"으로 한다.

제23조의3(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
- 2. 식생활 교육
- 3. 먹거리 안전성 확보
- 4. 먹거리 접근권 확대
- 5.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충
- 6.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·유통·소비·폐기·순환체계 확립
- 7.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, 먹거리

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수정 · 보완할 수 있다.

- ③ 국가는 구가먹거리종합계획에 따른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정·보 완과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<u> &lt;신 설&gt;</u>	제23조의3(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		
	수립) 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		
	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		
	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먹거리		
	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		
	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	
	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먹거리종		
	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	
	1.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		
	<u>2. 식생활 교육</u>		
	3. 먹거리 안전성 확보		
	4. 먹거리 접근권 확대		
	5.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충		
	6.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ㆍ유		
	통・소비・폐기・순환체계		
	확립		
	7.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		
	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		
	② 제1항에 따른 국가먹거리종		
	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,		
	먹거리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		
	5년마다 수정・보완할 수 있다.		
	③ 국가는 국가먹거리종합계획		

제23조의3(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<u>다음</u>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~ 9. (생 략)

② ~ ⑥ (생 략)

<u>제23조의4(</u>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) (생략)

에	따른	먹거리	정책의	효율적
인	수립.	시행을	위하여	여 관련
<u>전</u>	문가로	구성된	자문당	<u> </u>
영	할 수 🤉	있다.		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및수정·보완과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4(지역먹거리계획의	宁
립ㆍ시행) ①	
국가먹거i	리

\_\_\_\_\_

-**.** 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종합계획에 따라 다음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5(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) (현행 제23조의4와 같음)